
-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립에 대한 -
자원순환과 추진상황 보고

2024. 01.

자원순환과

-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추진 관련 -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3153-9210 청소행정팀장 이임수 ☎9201 담당:김영훈 ☎6263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를 위해 자원순환과 내 기피시설TF팀을 구성하여 서울시 추진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안 제시 및 향후 건립 반대를 위해 힘쓰고자 함

□ 추진 경과

○ 기피시설TF팀 구성현황(2024.1. 현재)

- 구성인력 : 총 2명(행정7급, 행정8급 각 1명)

※ 필요 시 인력 탄력적 보강 운영

- 구성일시 : 2022. 9. 30. ~현재

○ 주요내용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홍보, 법률 등 부서별 지원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대응 전담 및 기피시설 백서 발간 추진

- 입지선정 관련 서울시 의견제출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과정 자료 요청

□ 주요 활동 추진사항

○ 2023. 5. 18.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 자치구 대상 대안설명회 개최

-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 자치구 : 종로, 중구, 용산구, 서대문

- 신규 소각장 건립에 대해 대안 설명 및 방안논의

○ 2023. 9. 11. 양천·강남 자원회수시설 현장 방문

○ 2023. 9. 12. 노원·마포 자원회수시설 현장 방문

- 소각장 운영, 시설 확인 및 현장 관계자 면담

○ 2023. 9. 13.~15. 자원회수시설 관련 전문 업체 방문

-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성능개선 가능성 및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전문 기술업체 방문 및 면담
 - ※ 보일러 교체 및 수관·수벽 설치로 성능개선 가능 및 대보수를 통해 최대 130%까지도 효율 가능
- 2023. 9. 26. 마포자원회수시설 방문 및 면담
 - 참석자 : 마포자원회수시설 소장, 서울시 자원회수시설팀장 및 담당자
 - 소각장 운영 및 관련자료 요청
- 2023. 11. 11.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관련부서 방문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건설팀장 및 담당자 면담
 - 전문 공개요청 및 마포구 입장 전달
- 2023. 9. ~ 2023. 12.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대응관련 기획보고 수집 및 관련자료 작성
- 신규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관련 : 총 6회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2022. 8. 31. 구청 대회의실)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2022. 9. 28. 구청 시청각실)
 - 소각쓰레기 감량정책 소각제로 가게 소개(2023. 3. 27. 광장 소각제로가게 앞)
 -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결사반대(2023. 9. 4. 마포자원회수시설)
 - 쓰레기소각장 예정지 토양오염(2023. 9. 21. 구청 시청각실)
 - 소각장 철회...서울시에 마지막 호소(2024. 1. 24. 구청 시청각실)

(2024. 1. 25. 9시 기준)

총계	방송	지면(중앙일간)	온라인	비고
91	5	6	80	

- 향후계획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반대 서명부 전달 (일정 미정)
 - ※ 서울시 및 환경부 등
 - 지속적인 마포구 제안 홍보 및 입지선정관련 자료 제출 요청
 -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진행상황에 따른 선제적 대응

□ 신규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감량정책 추진

① 소각ZERO가게 운영

- 개 소 일 : 2023. 3. 27.
- 운영장소 : 마포구청(월드컵로 212) 광장 내
- 24년 소요예산 : 573,809천원

○ 주요내용

-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별 세분화 수거 및 유가보상 시스템 마련
- 페트 분쇄, 스티로폼 감용 등 1차 처리 기능을 통해 재활용품 가치 향상
-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실천 유도로 생활쓰레기 절감
- 유가보상 기준(2023년 기준)

품 목	단 가	품 목	단 가	비 고
투명페트병	10원/개	비닐류	5원/kg	
플라스틱류	150~200원/kg	병류	10~20원/kg	
캔류	100~600원/kg	종이류	70~100원/kg	
※ 보상단가는 재활용품 가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적현황(2023. 12. 31.기준)

- 가입인원 : 477명
- 이용건수 : 2,282건
- 수거현황

품목	총계	플라스틱	캔	종이	의류	병	비닐
수거량(kg)	7134.94	2405.03	399.96	2931.42	744.44	603.29	50.80

○향후계획

- 설치목표 : 총 32개소(순차적 확대)
- 맞춤형 소각제로가게 운영: 아파트형, 주택가형, 이동식 소각제로가게 등

② 커피박 재활용 사업

- 추진대상 : 관내 커피전문점 100개소

○ 추진방법

- 커피박 재활용 홍보 및 참여 커피전문점 모집·관리
- 수거 및 운반 용역계약을 통한 커피박 방문수거(주 1회)
- 커피박을 사료,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업체에 제공

(단위: kg)

구 분	합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 거 량	68,408	1,960	13,575	10,915	8,876	10,716	12,266	10,000

○ 향후계획

- 동주민센터, 환경공무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활용하여 커피박 수거 확대(주2회)

③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집중단속

○ 추진배경

-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단속 강화로 소각대상 생활쓰레기 감량 필요

○ 추진방안

- 혼합배출 금지 스티커, 전단지 등 홍보물 배부 통한 주민 계도
- 상점가, 소형 음식점, 재래시장 중심 혼합배출 단속 강화

○ 추진실적

- 쓰레기 배출규정 위반 단속 : 총 1,019건(행정지도 544, 과태료 475)
- 상습민원 발생 구역 및 전통시장 총 285개소 홍보물 부착 및 2,324건 계도 실시

○ 기타활동

-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 대행업체 음식물 혼합배출 의심 폐기물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및 조치사항
- 혼합배출 집중단속 현수막 게시

○ 향후계획

- 골목길 청소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혼합배출 집중단속 지속 추진

□ 서울시 기초자료 계산 오류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생활폐기물 현황 자료는 생활폐기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생활“계”폐기물 수치로 산정

생활계폐기물 (3,246톤)	
일반생활폐기물	사업장비(非) 배출시설계폐기물
2,860톤	386톤

구 분	생활계폐기물	
	생활(가정)폐기물	사업장비(非) 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사업장 별도 처리
매립	수도권매립지	기타

-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가연성 생활(가정)폐기물로 한정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에 등에 관한 관리기준 일부발체

제10조(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① 시설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부칙<2021.6.15.>

제2조(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반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반입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적용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경과조치 이외의 모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금지한다.

부칙<2022.6.28.>

본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년 생활폐기물 추가 필요 소각량

(단위: 톤/일)

추가 필요 소각량	1일 필요처리량 (소각장 운영일 기준)(A)	소각량 (B)	인구 감소에 따른 소각 감소량 (C)
744	3,479	2,659	76

- 서울시가 주장하는 1,000톤은 현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수치까지 산정이 돼 서울시 용역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잘못된 수치임
 - 소각량 기초자료 386(톤/일) 오류

□ 입지후보지 선정배점표의 부당성

- ‘환경기초시설’의 자의적 선택
 - 입지조건 8.환경기초시설중복여부(3점) 지표는 입지후보지의 해당 자치구 내 환경기초시설 수량으로 차감 배점하고, 그 종류를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하여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로 제한(제8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중) 함.
 - 마포구에는 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하여, 당인리 화력발전소, 석유비축기지, 상암 수소스테이션, 상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난지도등 광역 차원의 사업인 환경기초시설이 6개 존재하고 이를 반영하면 해당 지표에서 4개소 이상(1.8점)에 해당됨
 -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하여 소각시설 1개(2.7점)만을 반영함
 - 이는 마포구가 750톤의 소각장이 있음에도 ‘환경기초시설 중복여부’ 중 동일시설에 대한 지역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표 계속> 입지적 조건 세부 평가항목 검토			<표 3.2.1-8> 평가방법			
유사사례	적용여부	적용사유	평가항목	배점비율	배점기준	평가내용
환경기초시설 중복 여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사례에는 없음 서울특별시에는 4개 소각시설이 및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으며, 이미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타 지역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반영 	환경기초시설 중복여부	수 100%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지 소재한 자치구에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존재 여부 조사 * 평가점수 : 입지후보지 해당 자치구 내 환경기초시설 수량에 따라 평가 점수 반영 ▶ 평가에서 → 후보지(A) : 기존 환경기초시설 1개소(90% 배점율)
				우 90%	1개소	
				미 80%	2개소	
				양 70%	3개소	
				가 60%	4개소 이상	

출처) 입지타당성조사 보고서

○ 입지후보지 대분류 평가점수 문제

- 대분류의 배점은 입지선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 설정 및 배점은 중요한 사항임
- 평가배점표를 5개 대분류 설정하였으나,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사회적 조건’ 분야 배점점수가 35점으로 가장 높음
- ※ 23개 지자체 평균: 사회적 조건 25점, 환경적 조건 26점
- 아울러 23개 타지자체 평가기준은 배점차가 최대 12점이나, 서울시는 25점 차이를 보임
- 환경적 조건에 더 큰 배점을 준다고 가정하면, 사회적조건의 0.1점 차이는 더 줄어들고 환경적 조건의 1.1점 차이는 더 늘어나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음.

구분	서울시 입지선정 평가표 배점	23개 타지자체 입지선정평가 배점평균	비고
계	100	100	
입지적 조건	20	20	
사회적 조건	35	25	
환경적 조건	25	26	
기술적 조건	10	15	
경제적 조건	10	14	

출처) 입지타당성조사 보고서

□ 수소체험박물관 사업 철회 관련

- 상암동 481-6번지 일원은 「수소체험박물관(가칭) 건립 사업」을 2020년 7월부터 추진중인 지역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평가계획에 따르면 [③ 해당입지의 타 용도 개발계획 수립예정지역] 배제기준에 해당
- 2021. 11. 서울시 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 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임위 결과 해당 사업삭제
- 2021. 12. 설계공모 의뢰건 철회

○ 설계공모 취소 관련 공문 요청하였으나 비공개 회신

- 평가계획상 해당입지가 타 용도로 개발계획이 수립예정지라면 상암동은 배제가 되었어야함
- 수소체험박물관 사업이 철회가 됨으로써 배제지역에서 다시 입지후보지 해당지역으로 가능하게 됨

광역자원회수시설 지목변경 진행상황

부동산정보과 |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3153-9510 지적관리팀장: 강수인☎9511 담당: 김용현☎9512

□ 지목변경 신청 진행상황

- 소각장 추가 건립 부지인 상암동 481-94번지의 지목변경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분할)측량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적(분할)측량 및 지목변경 신청 접수되지 않음.

□ 지목변경 관련 부서 사전 협의 결과: 관련법 ‘해당사항 없음’

- 관련법 상 ‘해당사항 없음’ 의견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법 관련 해당사항 없음
 - 맑은환경과: 토지환경보전법 관련 해당사항 없음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법 관련 해당사항 없음
 - 건축지원과: 건축법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상암동 481-94 토지이동 연혁

- 상암동 481-94번지는 1993.8.4. 서울시 난지도관리사업소의 상암동 난지도 매립장 부지 지목변경 신청으로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2012.12.27.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월드컵공원 부지 지목변경 신청으로 잡종지에서 공원으로 변경됨.
- 상암동 481-94 토지이동 연혁
 - 1993.08.04.: 지목변경(전 → 잡종지)
 - 서울시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상암동 난지도 매립장 부지 지목변경 신청
 - 2012.12.27. 지목변경(잡종지 → 공원)
 -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월드컵공원 부지 지목변경 신청

□ 향후계획

- 서울시의 지적(분할)측량이 재신청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분할측량 성과검사 요청시 관련부서(자원순환과, 맑은환경과,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등) 협의 및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예정

소각장 등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민원 진행사항

맑은환경과 | 맑은환경과장:박광운☎3153-9250 에너지관리팀장:조성오☎9281 담당:이예진☎9287
대리질관리팀장:장용수☎9271

□ 일정별 추진사항

일 자	내 용	비 고
'23. 7. 5.	○ 세계일보 등 불소 초과검출 관련 언론 보도	조사배경
'23. 7.13.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관련 환경부 질의	
'23. 7.25.	○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예정지 등 관내 토양오염우려지역 토양오염도 조사 계획(방침) 수립	
'23. 8.16.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추진 시 토양오염도 조사, 다이옥신 항목 추가 및 계절별 조사 건의	관련 민원 다수 접수, 1인 시위 등 발생
'23. 8.28.	○ 토양오염도 조사 시행 ▶ 22개 항목, 토양오염우려지역 7개소(18지점)	
'23. 8.28.	○ 환경부 질의 회신 ▶ 답변내용: 지역구분 관련 판단은 자치구 권한	
'23. 9.18.	○ 분석결과에 따른(9. 15. 접수) 토양정밀조사 사전통지 ▶ 정화책임자: 서울시(자원회수시설과, 서부공원여가센터), 한국중부발전	· 18지점중 14지점 기준 초과
'23.10.10.	○ 서울시 등 정밀조사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23.10.19.	○ 서울시 등 정화책임자에 토양정밀조사 협조 요청 ▶ 이행기간: '23. 10. 20. ~ '24. 4. 19.(6개월)	
'23.10.30.	○ 서부공원여가센터 주관 토양오염도 재(공동)조사 ▶ 재조사 협조 요청(10. 26.)에 따라 월드컵공원 일대 및 문화비축기지 등 4개소(7지점) 재조사	
'23.11.23.	○ 재조사 결과(11. 16. 접수)에 따라 기준초과 지역 토양정밀조사 재협조 요청	7지점중 6지점서울시 6, 마포구 3지점) 초과
'23.12.15.	○ 서울시에 토양정밀조사 추진근거 안내 및 이행협조 재요청 공문시행	

□ 토양오염 처리 절차

토양오염우려 기준 초과	토양정밀조사 명령	정화조치 명령	이행조치 보고
<p>토양오염도 조사</p> <p>▶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시 정밀조사명령</p>	<p>토양정밀조사 명령</p> <p>▶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 명령 ('23.10.20.~'24.4.19)</p> <p>▶ 6개월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p>	<p>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 초과시 정화책임자에 오염토양의 정화명령</p> <p>▶ 오염토양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이행 명령</p> <p>▶ 매회 1년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p>	<p>조치명령(토양정밀조사, 정화조치) 이행 완료 시 이행보고서 제출</p>

□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결과

일 자	내 용
'22. 12. 21.	-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조회(서울시 ⇒ 마포구)
'23. 2. 3.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포구 ⇒ 서울시)
'23. 3. 7.	공청회 개최(서울시)
'23. 4.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23. 5. 17.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통보 (한강유역환경청 ⇒ 서울시)
'23. 7. 2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한강유역환경청 ⇒ 서울시)
'23. 8. 31.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최종 선정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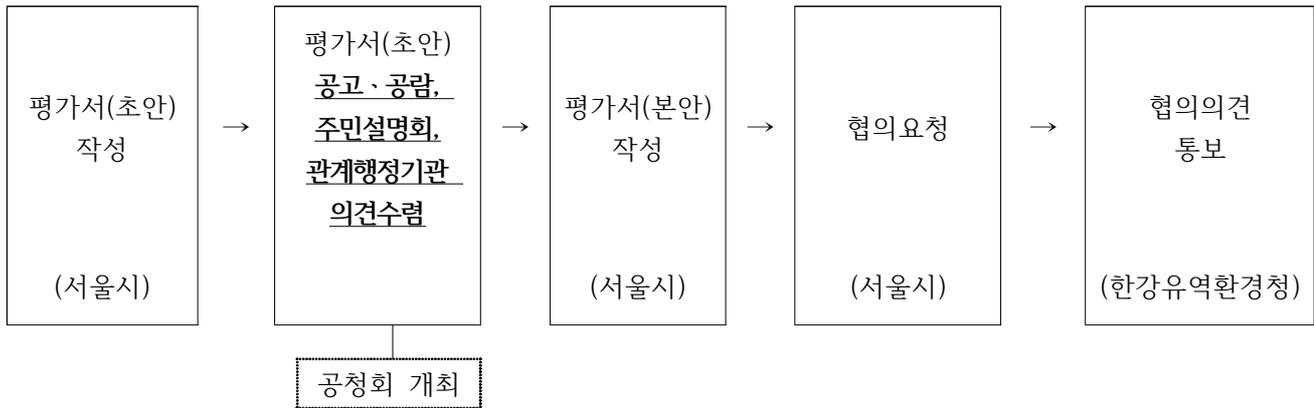
※ 현재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준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예정

□ 향후계획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

[붙임] 환경영향평가 절차

□ 환경영향평가 절차



1. 평가서(초안) 작성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시행령 제34조]

2. 평가서(초안)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시행령 제36,39조]

-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협의기관, 승인기관,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공람기간 20~60일)
- 설명회 개최(초안의 공람기간 내):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

※ 공청회 개최 요건(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0조 (공청회의 개최 등)

-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평가서(본안) 작성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시행령 제46조]

4. 협의요청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시행령 제47조]

- 승인기관(서울시) →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

5. 협의의견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0조]

-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 → 승인기관(서울시)
-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통보